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6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조영신 석유산업과장, 최세나 사무관(2110-5458)	

정부,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거부·사재기" 등 집중단속 실시

◇ 위법행위 근절공고, 위법시 최고 3년이하 징역 / 1억원이하 벌금
◇ 전국에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7.6일 정유사 100원/ L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월 27일(월)에 발표함

○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하여,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하게 되며,

○ 동 명령을 위반할 경우,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식경제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 지식경제부,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 각 지역별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소비자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2011년 7월 1일~31일)'**을 정하여 집중단속 함으로써,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안정**과 동시에 **유사석유 근절**에도 힘쓸 계획임

□ 금번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의 내용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적용**됨

< 소비자 신고센터 >

·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 02-2110-4889
·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 대 한 석 유 협 회 : 02-3775-0521
· 한 국 유 통 협 회 : 02-555-8322
· 한 국 주 유 소 협 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 02-986-0911

< 사업자별 특별단속반 >

· 석유정제업자 (정유사)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일반대리점) :
 시·도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주유소) :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참고 : 1.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2.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체계도

참고1 **공고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1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의무사항, 행위금지 유형 및 단속 계획 등을 공고하고, 제38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6. 27.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 석유정제업자의 의무사항 】

1.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휘발유 및 경유에 한함)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석유정제업자는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에게 기존 거래량을 감안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여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석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

3.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재기
-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행위
- 등록된 저장시설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저장 및 보유하는 행위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

5.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상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 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6. 제5조의 명령을 위반한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조,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일일보고 명령 】

8.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출한다.

※ 지식경제부 공문은 지자체 및 협회를 통해서 발송 (2011년 6월 27일)

9. 제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비자 신고센터 및 단속반 운영 】

10. 국민 누구나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 02-2110-4889
·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 대 한 석 유 협 회 : 02-3775-0521
· 한 국 유 통 협 회 : 02-555-8322
· 한 국 주 유 소 협 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 02-986-0911

11.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 조사 및 처벌한다.

< 사업자별 특별단속반 >

· 석유정제업자 (정유사)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일반대리점) :
 시·도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주유소) :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유사석유 특별단속 등 】

12. 한국석유관리원은 동 기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한다.

13.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는 동 공고 위반행위 및 처벌결과를 한국석유공사로 통보하여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되도록 한다.

< 부 칙 >

① 동 공고는 2011년 6월 27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적용된다.

참고2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체계도 〉

총괄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사업자현황 : 2011.5월기준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남부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경기북부	·대구 ·경북	·전북	·제주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중부지사	·동부지사	·대구경북지사	·전북지사	·제주지사
소시모	·서울지부 ·경기남부지부	·부산모니터 ·울산모니터	·광주지부	·대전지부	·강원지부	·대구모니터	·소시모협력단체	·소시모협력단체
사업자현황	·2,879개 – 일반대리점 : 128 – 주유소 : 2,751	·2,170개 – 일반대리점 : 121 – 주유소 : 2,049	·1,355개 – 일반대리점 : 33 – 주유소 : 1,322	·2,207개 – 일반대리점 : 63 – 주유소 : 2,144	·1,624개 – 일반대리점 : 46 – 주유소 : 1,578	·1,890개 – 일반대리점 : 21 – 주유소 : 1,869	·1,009개 – 일반대리점 : 21 – 주유소 : 988	·211개 – 일반대리점 : 3 – 주유소 : 208

◈ 석유정제업자 (정유사)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일반대리점) : 시·도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주유소) :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